

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,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2호) 및 「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」(경기도 고시 제2015-120호)에 따른 「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13일

군 포 시 장

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,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2호) 및 「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」(경기도 고시 제2015-120호)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로 한다.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 [별표3]제2호가목1)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가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관계규정을 따른다.